

市場經濟移行諸國과 國際農業開發協力⁽¹⁾

王 仁 權

본 소고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크나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구사회주의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정치체제로의 이행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학회지 논문 형태로 간추려 발표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상의 제반 거시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우리의 대북개발협력의 선택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서너 가지의 면, 다시 말하면, (1) 구사회주의 농업 발전 문제점, (2) 국제개발협력의 정치적 재음미, (3) 선택적인 명제 형태의 선진국의 전략 등을 특히 農業 또는 農村開發 부문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살핀 셈이다.

다만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성격의 본고의 기본성상에 비추어 보아 과단순화적인 기술로 시종하였으며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괄적으로 부기함으로써 상해를 벗어난 것은 독자의 이해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결국 본 소고는 시장경제이행체인 구사회주의제국의 농업/농촌개발은 필연적이며 전방위적인 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협력 공여측인 선진국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이다. 國際開發協力=國際開發援助이므로 우선은 기업채산적인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개발협력의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정황을 잡지 못하는 듯한 자유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선진제국 및 이들의 집단 조직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지구화적인 변형,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1. 머리 글

상대적으로 극히 짧고도 간결한 본 소고에서는 舊社會主義諸國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市場經濟移行諸國에 대한 國際農業開發協力の 필요성을 재음미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개념적이며 실제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범주에 속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 개발협력의 공여측의 일원이며, 동시에 동족인 북한이 이의 수령자 대상 중의 하나이므로 적지 않은 정치적인 민감성을 지니는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1) 본 소고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齋藤 優(사이토 마사루)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다.

문제의 본질적 성상과 물리적인 제약 등의 피치 못할 제요인으로 말미암아 본 소고의 기술은 부득이 상례를 벗어나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게끔 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사회과학적인 학제적 접근을 매우 일반적 또는 요약적으로 간추려서 적용·기술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또 하나는 각주 및 참고문헌을 대단위적, 광역적 또는 대범주적으로 장 또는 절 단위로 쪽수의 표기 없이 작성하여 부기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꼭 필요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간명하게 각주를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독해성(Readership)의 면에서 걱정을 상당 정도 지니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자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는 본 소고인 셈인데, 기본적으로 볼 때에 본 소고의 실질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이행제국의 일반적인 농업의 특성을 간추려 살피는 것이며, 둘째는 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협력의 개념과 선택적이며 광역적이자 복합적 형태의 원칙 또는 명제로서의 전략의 기술이다.

2. 舊社會主義諸國家의 基本 問題와 崩壞移行前의 自救的 諸改革政策

2.1. 舊社會主義諸國의 本來的인 基本的 特性⁽²⁾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하여 온 자유주의적인 세계의 資本主義體制는 20세기 초에 그의 모순을 문제삼아 대립개념으로서 개발되어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침투한 社會主義體制에 의하여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제국의 거의 전부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도록 체제이행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 면에서 일반적, 선택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주요한 문제의 특징은 (1) 주로 국가에 의한 생산경영수단의 집단적 소유, (2) 중앙관료계층구조에 의한 지령형 또는 '命令-服從關係' 하의 기획과 경영실행방식, (3) 중심기구로서의 공산당의 비인격적인 독재적 지배, 그리고 (4) 서방자유시장경제국을 타도하기 위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측의 패권적 국제연대의 팽창 강화 등이 지적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서 국제적인 사회주의체제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중첩적인 기술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지만 (1) 체제의 경

(2) 福武直, 日高之郎, 高橋 撤 編(1966), 甘川隆吉 監修(1983), 東京國際研究クテブ(1990), 齋藤 優(1995), 國際農林業協力協會(1998), テオドル・ベルクマン他(199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년간), 博英社(1994).

직성으로 말미암아 범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바 기술혁신활동의 원천인 창조력의 배양과 발휘를 위한 자유와 유인이 크게 제약적이며 억압적이었기 때문이며, (2)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의한 정치 또는 통치가 실패하고 부패가 크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3) 나아가서는 미소간의 군사패권경쟁에 의한 궁핍화의 악순환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이와 같은 구사회주의제국가의 체제붕괴의 필연성을 國際開發協力 理念의 전향적 변화 조류에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국제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대응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사회주의제국들의 사수적 대응 충동으로 남북대립의 격화를 배경으로 한 이념적인 갈등조류가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는 남북협력의 강화에 의하여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기할 것을 역설한 『브란트 委員會報告書』(Brandt Commission Report(1980))로 대표되는 바와 같은 ‘南北協力教義’ 또는 ‘國際協力教義’에도 위배되는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구사회주의제국이 붕괴되고 시장경제체제화가 가속화되어 국제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고 또한 가일층 진전케 되기에 이르러 지구화시대(Globalization Age)에 접어들게 되어 국제협력의 이념적 조류는 ‘지구화교의’라고도 볼 수 있게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개발협력의 이념은 오늘날 인간을 인적자원이나 인간자원과 같이 생산경영요소의 하나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보게 되기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이 바로 개발의 목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으므로 구사회주의국가체제가 설 땅을 잃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록 과단순화적일 것이지만 사회주의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된 것이며,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체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바람직하다고 흑백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나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제모순에서 생긴 사회주의체제는 말하자면 그의 목표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는 데에서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 舊社會主義諸國 農業의 崩壞移行前의 自救的 諸政策⁽³⁾

이미 앞에서 지나치게 단순화적 또는 일반적으로 간명하게 본 바가 있는 사회주의체제

(3) 齋藤 優(1995), 國際農林業協力協會(1992, 1997, 1998, 1999, 2001a, 2001b), 國際協力總合研修所(2001), 1990年代初頭(に)ずける東歐の農業改革のびゆく農業(789)(1990).

의 기본문제들과 이들 제국가들의 몰락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의 기본적인 원인적 문제들은 그대로 또는 직접·간접적으로 이들 제국의 농업문제상을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자료나 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중복적인 기술이 되는 점이 기본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지만 특히 구소련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 문제에 역점을 두면서 자구적 제정책을 간명하게 일반적으로 재음미하는 것은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試行錯誤’와 ‘問題解決’을 피하는 속성을 크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敗北是認/移行受容’의 능력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것을 겸허하게 재인식하는 계기도 된다는 의미 또는 시각에서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인간이 지닌 위대한 ‘適應性(Adaptability 또는 Adaptation Capac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브레즈네프 정권(Brezhnev Regime)도 그의 ‘食糧프로그램’에 입각한 농업개혁을 꾀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생산현장에 도달하여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고르바초프는 가히 ‘고르바초프 農政의 革新性’이라고 특별히 여겨질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농업의 개혁에 도전하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바로 고르바초프(Mikhail Sergeevich Gorbachyov) 정권하의 1980년대의 일이 되는 것이며, 몇 가지 범주의 農業改革事項 또는 理念을 선택적으로나마 추출,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종래의 정책을 규제하고 구속하여 왔던 이데올로기나 도그마가 버려지고 농업생산의 증강과 경제효율의 증진을 농업정책의 최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둘째로 가족생산청부제의 장려와 개인부업경영의 규모제한의 해제였으며, 셋째로는 소집단 노동조직의 전면적 도입이었다. 넷째로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체제 쇄신정책, 즉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불가분의 관계에서의 농업개혁의 추진이었는데 이는 극히 상식적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다섯째로, 60여년의 장기에 걸쳐서 관행으로 되어 온 정책수법인 ‘命命-服從關係’를 전면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콜호즈(Kolkhoz),’ ‘소프호즈(Sovkhoz),’ 가족, 개인 등의 경영적 자주권이 확보되고 당의 중앙정책으로 하여금 말단까지의 침투를 임무로 하여 조직기능하는 계층적 관리기구의 각각의 환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472천명의 농정관료를 약체화,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권수뇌의 의도의 표명이며, 과거에도 몇 번이고 시도된 농업합리화대책과 목표와 같았지만 실행과정에서 왜곡·무시되어 버리는 가능성이 컸으며, 고르바초프의 명운과도 연관된 것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다시 나아가 여섯번째로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생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재래의 정책수법의 연장으로써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금기까지도 깨기

시작하였다. 앞서의 브레즈네프 정권 시대의 18년간을 통하여 최대의 정권과제는 食糧増産이었으므로 이에 이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관련부문을 포함할 때에 총투자의 1/3에 달하였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등의 경상적 생산경영제도 3-4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조달가격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도시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소련경제에 대단한 부담을 주었으며, 식량공급부문에 총투자의 1/3이나 투하되고 있던 것은 미국 등 민주적 선진경제권에서는 5%도 안 되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비정상적인 과잉투자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련의 식량수급의 압박도는 오히려 격화되었던 것이다.

일곱번째로는 국민대중으로 하여금 페레스트로이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분야에서 조기에 개혁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87년에 들어가는 식량공급, 주택건설, 공업소비재생산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식량공급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여덟번째로 고르바초프 정권은 1985년 3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농업개혁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식량증산과 이를 위한 증산수단으로서 투자, 기계, 토지개량, 비료와 농약의 증투, 그리고 농촌정비 등의 물적 증강정책과 더불어 투자면에서 그의 비중을 농업생산 그 자체보다도 생산과 생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즉 도로, 수송수단, 주택, 생활시설 등과 농산물을 가공유통품으로 옮기는 새로운 방향이었다.

아홉번째는 農業政策改革을 경제적·조직적 차원의 것으로 전환, 즉 경제적 유도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콜호즈와 소프호즈의 경영활동을 경직적으로 구조화된 수직적인 명령적 관리에서 탈피케 하여 경제적 욕구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경영에 유리한 활동이 곧 국가목적에게도 적합하게끔 하는 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만듦으로써 넓은 경영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여 국가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확보케 하려는 것이었다.

열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바 農業改革政策的 理念은 농업경영체의 經濟的 自立性의 철저화였다. 콜호즈, 소프호즈, 그리고 농업관련기업 등이 현실적으로는 국가경제조직내의 생산단위와 같은 것으로 경제적 자립성은 명목적인 것으로 멈추게 되었었다. 이윤을 많이 내면 국가예산 또는 상부기관에서 몰수 이관하였으며, 반면에 적자를 내어도 국가가 보조금과 융자로 경영의 파산을 막아 주었다. 여기에서 비용절감이나 수익율의 제고에 의하여 경영재무의 향상을 도모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열한번째로 지적되는 바 고르바초프 정권의 농업개혁적 이념은 인간적 요소의 활용과

경영주체감의 배양이었다. 각 노동조직은 특정의 경지와 작물에 대하여 자주적인 경영작업방식을 적시에 적용할 수도 없고 다만 경영관리부의 지시에 따를 따름이었다. 작업은 각 노동자에게 전문업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연대의식도 없고 각자의 '노르마(norm),' 즉 割當作業量을 어떻게든 손쉽게 달성하는 데 부심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업종마다 기계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임금배분 때문에 노동의욕의 제고나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발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가치관이나 태도가 생성될 리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열두번째로 지적될 수가 있는 것은 다양성의 승인이었다. 자연환경이나 입지조건변의 변이성이나 경영자의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인 전통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중앙기관은 획일적인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와 경영관계의 제약화, 집단청부제, 가족청부제로의 이행, 개인부업경영의 제한 철폐, 농촌조직의 다양화, 그리고 경영체의 직접적인 대외경제활동의 허용 등이 내세워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1980년대 중반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소련농업의 개혁적 정책구상을 볼 때에 소련과 같은 패권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체제모순의 개선에 대한 '알아차린 필요(Felt-Needs)'를 되새길 수가 있는 것은 비록 그 후의 상황전개와 실천화 여부 등을 고려에 넣더라도 사회주의국가의 농업문제가 여실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990년 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붕괴의 결말을 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

3. 選擇的 市場經濟移行諸國의 農業 概況⁽⁵⁾

1998년 8월 중반의 러시아의 금융위기에 의하여 9월 이후 대외의존도가 강한 동국의

(4) 1950년대 말에 필자가 연수차 미국의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 갔을 때 동대학교의 교수 4명이 소련농업시찰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옥수수재배 농가전체가 새로 개발된 잠중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30여 년이 소요되었는데 소련에서는 지시명령으로 미국에서 고르바초프가 가져간 잠중옥수수를 재배케 하는 데 단 1년밖에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중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목도한 바 있다.

(5) 거의 모든 2)의 참고문헌, 일본의 國際農林業協力協會(AICAF)에 의한 해외농업개발조사연구의 국별연구시리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계간), 부경생 외(2001), 國際農林業協力協會(1998, 2002), Germ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SE) (1990, 1999a, 1999b),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Annual),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2001), 守友裕一(1991), Tri and Others (1986).

식료품수입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도의 농업생산은 1957년과 비교할 때에 12.3%의 감소를 보였으며, 계육이나 돈육의 생산이 회복된 것을 별도로 하고 본다면 축산은 위기적이며 그의 생산은 1990년 수준의 57%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농업기계나 비료부문은 붕괴되고 말았다. 1998년에 구소련 또는 러시아가 경험한 긴박한 상황 하에서 동국은 사료부족을 계념하여 그의 원조를 미국과 유럽 연합체(EU: European Union)로부터 얻었으나 러시아 농민은 국내생산물에게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고 이것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 당국은 식료품부문에의 지원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업의 현상은 크게 보아, (1) 일관된 생산저하와 (2) 농업기계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재 상황의 악화로 크게 요약될 수가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예컨대 농업기술장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준의 1/3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문제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구소련 즉 소비에트 시대 말기 이후에 착수된 제개혁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규명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동국의 계획 경제 속에 있던 캄차카(Kamchatka)주의 농업은 경제적 자유화에 직면하여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왕의 사회주의 시대의 몽골(Mongolia)에서는 전통적 축산국가라는 이미지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예컨대 화력발전소의 건설,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공장 건설, 그리고 국영농장에서의 기계화 농업과 곡물생산의 확대정책 등은 동국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9-1990년에 들어가는 민주화의 격동이 우란바투를 위요하였으며, 타방에서는 그때까지 예상도 하지 아니하였던 소련과 그의 패권체제의 붕괴라는 충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이의 결과로서 議會制 民主主義國家로의 전환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 포기되어 시장경제이행의 시도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제정책은 몽골 경제의 기간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농업에 있어서 크나큰 구조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경종부문과 축산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 농업부문 내부의 구조변화에서 전자만 보기로 한다면 곡물생산량은 1989년의 86.9만톤으로부터 1998년에는 19.5만톤으로 격감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소맥생산량은 68.7만톤에서 19.2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경제이행적인 신생 루마니아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Rumania)은 농지소유권의 사유화에 의한 自作農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창설된 자작자영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비료, 농약, 종자 등의 경영자재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들 농업자는 이를 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수량이 떨어지는데 과수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수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실의 품질이 저하됨으로써 수익성이 낮게 되어 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이 필요한데 자영농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령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리는 연간 50-60%로 극히 높다.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식량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는데 구사회주의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경제난이 크나큰 농업자연환경의 악화와 함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간주되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기계화와 수리관개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 공급의 부족이 북한의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황폐된 산림과 집단제 경영방식도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6.15 南北頂上共同宣言 이후에 한국은 대대적인 농업원조를 베풀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정치적 민감성이 적지 않게 개재하고 있는 면도 있으며, 북한과 남한 간의 제반 도전적인 특수사정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온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정권도 나름대로 시장경제 이행적인 제반 농업정책조정을 베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은 인간생존육구적인 식량부족문제로 크게 특징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⁶⁾

이상에서 선택적인 시장경제이행과정에 있는 제국의 농업상황을 상당정도 일반적으로 개관한 셈인데, 모든 시장경제이행국들은 나름대로의 변화적 대응을 거센 도전에 대하여 베풀고 있는 것이 간취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사회주의국가 체제하에 있던 이들 국가들은 발전적 적응 또는 정책조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어김없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內發的 發展(Endogenous Development)의 효율적인 기획·실천이 필요불가결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外發的 發展(Exogenous Development)의 投入(Inputs)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극히 자명한 바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하에 있는 선진적인 자유주의적 국가들, 그리고 이들에 의한 국제적 기구의 책무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체제이행은 문자 그대로 재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6) 북한은 사회주의적 체제상의 문제점과 자연환경의 극심한 악화로 식량식물과 비료 등의 농업 자재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대대적으로 원조 받고 있는 근년임.

4. 國際開發協력과 國際農業開發協力の 基本 概念과 實踐 計劃

4.1. 國際開發協력과 國際農業開發協力の 基本 概念⁽⁷⁾

세계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중에서 그의 규모, 기간, 그리고 지리적·영향적 범위에서 보아 최대의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수준을 지닌 범주의 국가들과 높은 개발수준을 지닌 범주의 국가들을 이분화하는 남북간의 것,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것이 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 또는 '先進國'이라는 용어는 그 어느 연관적인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예컨대 세계은행 등은 1인당 GNP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서 '低中의 所得國家'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과 '高所得國家' (High Income Countries)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대체로 \$6,000 가량을 경계로 하여 그 이하인 전자가 '開發途上國' (NDCs: Newly-Developing Countries)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적으로 절대 지배적인 개발도상국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저개발의 농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생존욕구충족적이며 식량안보적인 농업개발이 국제개발협력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측의 개발도상국측에 대한 國際農業開發協力(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기실에 있어서 國際農業開發援助(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등지에서 보고 있듯이 좌절도 적지 않게 크며, 녹색혁명 등에 의하여 진척을 보아 오고 있는 면도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흡하다. 기근으로부터의 해방은 기축적이며 빈곤의 경감과 그로부터의 해방은 적절한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개발 필요조건 또는 최종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이 여전히 전통적인 많은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도전적인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벽의 붕괴에서 발의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지만 이어서 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구사회주의제국가의 市場經濟(Market Economy)에의 이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른바 移行國家

(7) Cooper and Packard(1997), Young(1989), 왕인근(1995a), World Bank(2001), 한국국제개발학회지(2000), 松井 謙(1979), 多谷千香子(1994),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00).

들(Transition Countries)에 대한 국제농업개발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개발도상국가의 범주에도 대부분 들어가는 이들은 전혀 다르게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국가들이며, 또한 농업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국제추세적인 시장경제체제에의 이행을 국제농업개발협력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우리의 동족이며 앞으로 우리와 통일을 보아야 하는 북한도 바로 이와 같은 이행국가인 것이다.

國際開發(International Development)은 國家開發(National Development) 또는 國內開發(Domestic Development)과는 달리 개발활동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을 두고 말한다. 따라서 國際關係(International Relations)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개발 또는 국내개발을 직접적으로는 문제로 삼지는 않으나 이 두 범주의 개발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불가결적으로 밀접하기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즉 國際相互依存性(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국제개발, 그리고 國際開發協力(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더욱더 필요하게 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國際開發必要(International Development Needs)는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국가개발의 진전과 함께,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다양화·고도화·대규모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제국가의 개발은 상호적으로 관련되고 영향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시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아 국제개발과제가 대규모화 되면 개별적인 국가개발에 의하여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며, 여기에서 보다 고차적이며 대량적인 開發資源(Development Resources)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이의 단적인 표현 또는 개념의 보기가 ‘地球規模의 課題(Global Issues)’⁽⁸⁾가 될 것이다. 국제개발,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물질적 또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제도적인 것, 그리고 南北(North-South) 사이의 것, 선진국간의 것, 개발도상국간의 이른바 南南開發協力(South-South Development Cooperation)도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사회주의제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문제도 중요한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8) 日本의 國際協力社業團(JICA)의 산하중추기구인 國際協力總合研修所(IFIC-JICA)에서 1995년에 간행한 『國際協力概論』(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地球規模의 課題”(Global Issues)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전자가 연구서의 본명인지 후자가 그런지 혼란까지 빚고 있다. 여기에서의 지구규모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8개 범주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개발과 환경, (2) 빈곤문제, (3) 개발과 교육, (4) 개발과 여성(WID), (5) 인구문제와 출산건강, (6) 공중위생과 개발, (7) 참가형개발, 그리고 (8) 비정부기구(NGOs) 따위이다. 여기서의 “WID”는 “Women in Development”이며, “NGOs”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여러 나라 사이에서 베풀어져 오고 있는데 이 경우, 이상과 목적의 공유성과 동조성, 그리고 개발협력대상과 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어떠한 국제개발협력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은 관계당사자국의 국가체제, 구조, 협력이념, 협력필요, 그리고 협력방법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기 마련인데 남측, 즉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개발수준이 낮고 빈곤하며 식민지적 수탈을 당하였으므로 報償(Compensation) 그리고 더 나아가서 共生(Symbiosis)을 위하여 개발협력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측, 즉 선진국 측에서는 유효효과 등의 경제적인 이유, 평화적 및 안전보장적인 효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정치적 이유, 그리고 국제적 상호의존관계로부터의 판단, 그리고 인도주의적 및 윤리·도덕적인 이유 등을 제기하여 왔다. 물론 남측의 주장과 이치되는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여기에서는 선진국측의 국제개발협력의 공여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南北協力(North-South Cooperation)에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國際開發援助協力(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또는 國際開發援助(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등과 같은 개념 또는 용어가 되는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에 國際農業開發協力は 같은 맥락에서 國際農業開發援助 또는 國際農業開發援助協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 된다. 국가적 개발 필요 또는 국가적 농업개발 필요의 구체적 내용은 특정의 개별적 국가의 發展段階(Development Level or Stage)나 국제적 조건에 의하여 변이성을 보일 것이며, 이상이나 목적의 공유성이나 동조성과 개발대상, 그리고 능력 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크게 부각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개별적인 국가개발적 욕구 또는 필요는 더욱더 국제개발협력의 욕구 또는 필요가 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자금 또는 재정적 자원이 개발도상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자금 또는 경제적 자원은 크게 정부의 것과 민간의 것으로 범주화되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자, 즉 정부자금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먼저 民間資金을 보기로 하는데, 이는 民間營利資金(PFs: Private Flows)과 非政府機構(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의한 비영리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전자, 즉, 민간영리자금은 다시 수출신용, 직접 자금융자, 그리고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 비정부기구 또는 민간비영리기구에 의한 증여자금의 유입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기획, 집행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진제국의 政府資金은 다시 政府開發援助(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他政府資金(OOFs: Other Official Flows)

으로 구별될 수가 있다. 후자, 즉 타정부자금은 실질적으로 볼 때 극히 유리한 정부적 차원의 용자로 되어 있다고 보겠는데 수출신용, 직접투자금융,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용자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개발원조는 2국간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로 구별되며, 전자는 다시 증여와 정부간 대부로 분류된다. 후자는 증여, 출자, 그리고 대부 등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정부개발원조는 2國間 援助(Bilateral Aid)와 국제기구를 통한 多者 援助(Multilateral Aid)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개발원조를 순수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근년에 이르러 일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율의 것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개발원조만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원이라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특정국가의 국제개발협력에의 기여는 이와 같은 정부개발원조가 예누리 없이 결정적인 지표로 되어 있으며, 이를 관장 사용하는 기구가 개별적 개발협력공여 국가의 국제개발협력기구가 된다.⁽⁹⁾

4.2. 國際開發協力과 國際農業開發協力の 實踐 計劃⁽¹⁰⁾

국제개발협력을 기획, 실천하는 방식은 범주적으로 비슷하나 개발협력공여국에 따라서 변이가 있게 마련이다. 후발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 나라의 KOICA보다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개발협력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일본의 경우, 다시 말하면, ‘國際協力事業團(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기로 한다. 어느 의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게 되는 사업이 기술협력이다. 技術協力(Technical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의 중핵적인 행정가, 기술자, 연구자 등을 일본 국내나 특정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초청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국제협력사업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개발사업의 하나가 된다. ‘派遣專門家’는 개발도상국에 국제협력사업단이 파견하는 일본인 技術協力專門家(Technical Cooperation Experts Dispatched)를 두고 말한다. ‘開發研究專門家(Development Study Experts)’는 ‘開發調査專門家’라고도 하며, 개발협력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적인 각종의 공공적 사업의 개발계획의 책정을 지원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대상 또는 동반자적인 개발도상국의 전문가에 대하여 현지에서 개발계획책정방법, 조사분석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전문가이다.

(9) ODA를 배타적으로 관리·집행하는 특정국가의 기구가 국제개발협력기구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JICA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제협력사업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다.

(10) 앞서 본 바 있는 JICA의 2000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다시 나아가 靑年海外協力隊(JOCVs: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에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파견되는 청년들을 두고 말한다. '프로젝트方式 技術協力(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분야에서 개발대상국의 개발계획에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기술자 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년에 걸쳐서 계획적이지 종합적인 기술협력을 베푸는 것이다.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상당한 규모라는 성격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기술협력의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無償協力' 또는 '無償資金協力'(Grant-Aid Cooperation)은 정부개발원조 중의 중역의 일부로서 개발도상국정부에 반환의무를 과하지 않는 자금에 의한 협력이다. 마지막으로 '國際緊急援助' 또는 '國際災害緊急援助'(JDR: Japan Disaster Relief)는 세계 각지에서 지진, 홍수, 한발 등의 대규모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원조대나 원조물자를 공여하는 비교적 최근의 사업이다.

그리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의 한 하위분야이므로 이상에서 간결하게 살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개념과 실천방식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봄으로써 농업개발 일반의 영역에만 관심을 둘 필요만이 있을 것이다. 구태여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정의적으로 규정한다면 선진국의 政府開發援助(ODA)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예컨대 비정부기구 등에 의한 것을 전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¹¹⁾

4.3. 國際開發協力的인 農業開發과 農村開發⁽¹²⁾

국제개발협력과의 직·간접적인 시사적 연관하에서 農業開發(AD: Agricultural Development)와 農村開發(RD: Rural Development)과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극히 간명하게 기술하여 보기로 한다.

조선진국이며 또한 조선진소농국가인 일본의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경우 용어상으로 '농업발전' 또는 '농업개발'을 사용하여 농촌개발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있는 것이 인

(11) 비정부기구(NGOs) 또는 민간단체,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국제개발 또는 농업개발 비정부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AICAF는 『NGOと農林業協力』이라는 전문적 간행물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을 정도인데 이 기구에 의한 다음과 같은 2000년도 간행의 핸드북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AICAF(2000, p. 255)].

(12) 東京農業大學/日本農業を考る會編(1992), Hayami and Ruttan(1971), Greenshields and Bellamy(1983), Eicher and Staatz(1988), 주봉규·박정근(2001), 왕인근(1995a), 河合省三編著(1995), Chambers(1983), Asian Development Bank(1984).

지되고 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에는 농업발전 또는 농업개발과 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어느 경우에는 예상하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게 됨을 본다.

물론 농촌개발 또는 농촌발전에 대하여 농업발전 또는 농업개발의 차별적 내지 독자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이라는 용어나 개념에 크나큰 관심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에 지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농촌발전 또는 농촌개발을 주목할 때에 농업발전 또는 농업개발은 이의 하위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농촌개발 또는 농촌발전의 중추는 농업개발 또는 농업발전이라는 사실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첫째로 지배적으로 小農(Small Farm 또는 Holding)으로 되어 있는 다수자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을 예누리 없이 인식하여야 하며, 둘째로 중국적으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득을 많이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소농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소득면만을 볼 때에 '農村所得 또는 農家所得=농업소득+농외소득 또는 비농업소득'이 될 필요가 있다. 농업소득을 극대화하는 농업발전이나 농업개발을 전제로 한 경우에도 비농업발전이나 비농업개발을 통한 비농업소득 또는 농외소득의 발굴·확대는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오늘날이다. 따라서 國際農業發展 또는 國際農業開發이라는 용어나 개념보다는 國際農村發展 또는 國際農村開發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아야만 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국제농업발전이나 국제농업개발이 그 자체로서 부적절한 용어나 개념이라고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마련인 우리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점을 분명히 재음미적으로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國家體制의 開發과 移行的 國際協力⁽¹³⁾

본 기술에 관한 한 하나에서 열까지 일본의 저명한 개발국제경제 전문가인 사이토 마사루(齋藤 優)⁽¹⁴⁾의 소론을 전적으로 옮겨 소개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國家體制移行的 문제를 다룬 연구기술은 극히 드문데 그의 소론은 필자의 주제인 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위하여 일반론적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살피야만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봄으로써 거의 절대적인 의지를 보이면

(13) 齋藤 優(1995).

(14) 日本의 中央大學의 開發國際經濟學 教授이며 우리 나라 政府當局의 公式招請으로 몇 번 來韓자문하였으며, 필자와는 수십년의 지기임.

서 필요한 대로 옮겨 살피게 되었음을 분명히 미리 밝혀주는 바이다.

그는 그의 연구간행서인 『국제개발론』에서 무려 3개의 장을 할애하여 (1)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2) 최빈국의 개발전략, 그리고 (3) 국가체제의 개발과 이행의 국제협력을 특히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體制의 轉換過程과 國際協力’에서 체제개발, 전환 그리고 이행의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에서 세 개의 公理를 도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公理 1: 주류가 되는 [理想-이데올로기]가 [體制-秩序]를 결정하고, [체제-질서]가 [手段-政策]을 제약하며, 또한 [理想-政策-手段]이 질서의 정비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公理 2: 체제효율이 열악한 국가는 그것이 우량한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또 종래의 체제가 좌절 붕괴한 경우에는 체제의 재정비를 하던가 또는 전환 이행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公理 3: 국제질서의 정비, 확장, 그리고 신국제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관계제국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이데올로기]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면 이것에 공명하여 체제개발이나 체제이행이 베풀어지는 일은 자주 있으며 현행의 체제에 크나큰 불만이 생기거나 좌절된 경우의 體制變革의 過程(Process)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체제효율비교 → 종래체제의 좌절 → 체제 비판 이데올로기 비판 → 체제변혁운동(현행 체제의 수정 재건, 고효율 체제의 부분적 도입, 고효율 체제에의 전면적 이행, 전혀 새로운 체제의 개발, 기타)

‘體制變革의 方法과 經驗’과의 연관에서 그는 1991년의 소련동방측 패권체제의 완전한 붕괴에 의하여 산산히 분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산하의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변혁을 하였는데, 종래의 체제의 좌절에 의한 체제변혁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민족대립 등에 의한 내분 등으로 국민생활이 극도의 곤궁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제연합이나 다른 국제기구, 그리고 서방제국의 국제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체제변혁운동의 방법은 국가에 따라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이행체제방식을 취한 러시아, 중동구,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자본주의를 먹고 들어가는 중국적 사회주의, 그리고 국가부흥을 국제연합이나 국제기구에 의존하였던 캄보디아 등 여러 가지 방법적 유형의 변혁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체제이행을 구하여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취한 것은 급속한 이행의 충격요법적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체제이행의 성공여부는 주로 (1) 체제이행에의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정도 또는 크기, (2) 위정자에게 있어서의 체제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자원의 조달과 적절한 정책행사, (3) 구체제의 잔무처리와 체제이행의 초기조건, 통화안정성의 확보 노력, (4) 체제이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에의 대응능력, 그리고 (5) 국제적 지원 등으로 보고 있다.

다시 나아가 國際協力에 의한 體制建設(IE: Institution-Building)이 필요하게 되는 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게 된다고 범주화하여 지적하고 있다. 현행 체제가 국내분쟁에 의하여 궤멸상태에 빠져 인도적으로 중대위기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연합이나 타국제기관, 주요국들이 인도적 입장에서 경제원조를 하면서 체제건설에 협력하는 경우에 주안을 둔 것이다.

첫째로 화해조정, 정전감시, 무장해제,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공급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로 난민의 구제와 귀환의 지원, 그리고 무장해제병사의 정주와 생활기반의 확보 등을 보살펴야 한다. 셋째로 행정의 재건과 국정선거, 헌법제정, 부흥개발계획의 작성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경제질서의 형성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재건, 그리고 통화의 안정적 공급 노력을 베풀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국제협력에 의한 체제건설에 관심의 초점을 둔 사례이므로 점진적 또는 개선적인 성격의 것을 뛰어 넘는 성격의 논고임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제농업개발협력과 같은 부문적인 성격의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우는 것은 상당정도 문제로 인지될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최악의 파탄과 극빈국에서의 총체적인 체제건설을 일반론적으로 본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고는 중대한 함축성을 던져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은 본질적으로 볼 때에 총체적 국가체제이행 또는 체제건설의 하나의 하위적 범주의 것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인식이 될 것이다. 그는 예컨대 1990년대 초의 캄보디아의 경우의 경험사항을 주목한 최악적 또는 최극단적인 사상에 중점적 관심을 베푼 것으로 여겨진다.

6. 市場經濟移行諸國에 대한 國際農業開發協力の 原理 또는 戰略⁽¹⁵⁾

6.1. 序論的인 말

본 소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구사회주의제국이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이

행을 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들 제국의 새로운 농업개발을 위하여 국제적 농업개발협력이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여하여야 할 바를 복합적인 범주와 형태의 원리 또는 전략으로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미 간결하게나마 구사회주의제국의 이행전의 기본적인 문제적인 특성과 실패적인 붕괴 이행전의 자구적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시장경제이행제국의 실망적인 농업개발도 극히 조잡하게나마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협력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도 그의 상부개념인 국제개발협력 일반의 기본개념과 계획을 살핌으로써 시사적으로 살펴 보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서 비록 극한적 내지 총체적인 체제이행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이해도 외국전문가의 소론에 의하여 시사적 내지 함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기실에 있어서 본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과는 의미있는 직접적인 연계성을 적절하게 지니는 차원의 것 이상이었다고도 여겨진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은 기본적 또는 총체적으로 볼 때에 국가체제건설 그 자체라고 전체론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함의하는 총체적인 국제개발협력의 한 하위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비록 후발적 또는 신규진입적일 것이지만 선진국이며,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현실적으로 공여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매우 유력한 공여자라고 여겨진다. 우리 나라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신참적인 구성원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와 유사한 소농국이며, 또한 초선진국들로부터의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을 상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吸收(Absorption)하고 土着化(Localization)하는 데에 성공하여 공업화를 크게 이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구화적이며 무역자유화적인 국제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크게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개발은 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공업부문도 그렇지만 농업개발부문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크나큰 전략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농업개발(공업부문은 더더욱)은 이른바 능력이전(Capacity Transfer)의 단계에 실질적으로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후발적이며, 예컨대, 일본의 '國際協力事業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국제개발협력기구로서 '韓國國際協力團'(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15) Leagans and Loomis (1971), Pinstup-Anderson and Others (1995), Laszlo (1984), OECD (1989), Jedlicka (1977), Commonwealth Secretariat (1980), Long (1977), Tilakaratra (1981), Bhalla, James, and Stevens (1984), 장현식 (1999), 한국농업수산물학회·농촌진흥청 (1998), 嘉田良平他 (1995), 佐藤 寛 編 (1994, 1995, 1996,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2002), 왕인근 (1983, 1995b).

Agency)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크나큰 정치적 민감성을 지니고 실로 도전적일 수밖에 없게 이질성이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되어 버린 듯한 분단된 동족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그의 체제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적 노력을 정치적으로 다하고 있다는 것도 마땅히 지적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앞서 본 바 선진국집단기구인 OECD의 한 위원회로서 국제개발협력전문기구인 ‘開發援助委員會’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상급적 선진제국의 소집단으로서 전문자문적인 연구보고서가 매년 출간되고 있다. 이미 본 바도 있지만 일본의 저명한 개발국제경제학자에 의한 1995년도 간행연구서(齋藤 優(1995))에서 이미 ‘國家體制的開發과 移行의 國際協力’이 매우 드물게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세계적인 개발도상국연구소인 ‘아시아 經濟研究所’ (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의 한 소장 개발사회학 전문가는 국제원조연구회를 특히 내부적 조직으로 하여 국제원조 또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이미 연구성과로서 수권의 연구서를 출간하고 있는 것은 비록 한정적인 가용접근 정보이지만 극히 고무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본 바가 있는 조선진국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國際協力事業團’ (JICA)의 활동에도 적지 않게 낮익어져 있으며, 또한 준 국가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기구의 성격까지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바 거대한 NGO인 ‘國際農林業協力協會’ (AICAF: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e and Forestry)의 눈부신 국제농업개발적 활동상에 크게 노출되게끔 문헌적인 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필자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기술지원적 원천에 관한 기술은 본고에서 극히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국내적인 것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만 국한된 연관성이 큰 고도의 선택적인 기술인 것이다.

6.2. 市場經濟移行諸國을 위한 國際農林業開發協力的인 基本的인 原理와 戰略

이하에서 선택적으로 기술되는 구사회주의제국가가 발의하는 바 시장경제적 체제로의 이행면에서 특히 선진제국이 베푸는 농업개발협력에 관하여 그의 기본적인 원리와 전략은 복합적 형태의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된다. 원래는 원리 혹은 전략은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고 연후에 부연적인 기술을 첨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의 큰 범주에 나누어서 살피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러 가지의 사유에서 이를 지양하였으며, 또한 일종의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른 기술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비명시적인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접근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가급적으로 본고에서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대상인 구사회주의제국 즉

시장경제이행제국과의 연관적인 것에 국한하도록 노력을 하였다. 물론 생산기술학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면, 다시 말하면, 주로 체제적 또는 제도적인 면과 연관된 원리와 전략의 선택적 기술의 것이다. 비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려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북한에 대한 경험적 사상도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고려에 넣었으나 정치적 민감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 구사회주의제국가가 경과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제국으로의 이행은 남북협력적인 차원에서 선진제국과 그의 국제적 기구에 의하여 세계의 번영, 평화, 공생을 위하여 인도주의적으로 마땅히 직접적인 반대나 대가 없이 베풀어져야만 한다. 다만 開發協力提供國의 모든 能力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템포의 조절도 꼭 베풀어져야만 한다.

(2)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배적인 구사회주의제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농업개발협력은 국제적 개발협력의 한 하위부문이며, 아마도 이들 국가개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식량안보적인 절박한 필요도 있을 것이나 체제전환에 의한 이의 해결과 효율성의 민주적 제고를 기하는 데 제1차적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국제적 환경 하의 국가개발을 기폭적으로 발의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人間中心的인 農業開發' 이어야만 되는 바 여기에서 점진적 또는 단계적이지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평생교육적 또는 재교육적인 기본특성을 지님으로써 농민참여적 또는 농민자주적인 가치관과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과 실천을 보게끔 지원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人間主義的, 民主的, 그리고 參與的 管理形態' (Humanistic,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Management Style or Principle: HDP Management Style) (Jedlicka(1977))를 학습 내면화하는 데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4) 구사회주의 농업체제의 시장경제체제적 이행은 단도직입적으로 볼 때에 '토지, 노동, 그리고 결과되는 수확의 완전한 일체화적인 결합적 통합,' 다시 말하면 '협동집단에 의한 공동적 농업경영' 으로부터 탈각하여 '협동농업경영조직체제의 접근 또는 방향에 입각하되 개별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 으로 발전적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이 제1로 필요할 것이다(왕인근(1982)). 라자스와 슈메이커(Rogers and Shoemaker)가 말하는 이른바 '權威主義的 革新 意思決定'(Authoritative Innovation Decision-Making) 으로부터 벗어나 '共同的 革新 意思決定'(Collective Innovation Decision-Making) 이나 아니 이보다는 '個別的 革新 意思決定'(Optional Innovation Decision-Making) 으로 이행하는 것이 다른 아닌 자유주의적 또는 시장경제체제의 농업이 되는 것이다(Rogers and Shoemaker(1971)). 여기에서 일

본에서 크게 발전을 보아온 이른바 ‘集團農’ (Group Farming) [왕인근(1995a)]을 고려에 넣는 것도 좋을 것인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영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농업자가 되는 경우인 것이다.

(5) 食糧安保(Food Security)를 최우선으로 한 농업개발이 최우선적인 정책적 배려로 되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에 농업기술혁신의 제고에 의한 ‘協同 속에서의 競爭’ (Competition in Cooperation)의 기작에 따른 자본주의적인 ‘報酬體系’ (Reward System)를 도입·내면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농업을 증산시키고 개인적 경영체의 이윤 또는 소득도 증대시키는 誘因(Incentives)을 지니게 되고, 動機誘發(Motivation)의 의욕과 실천이 결과되어 能率的 農業(Efficient Farming)도 가능케 된다.

(6) 제반유인의 효과와 동기유발화는 세속적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To See is to Believe)’이라는 인간본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정보기술의 초보적인 것일 것인 展示方法(Demonstration Method) [왕인근(1982)]을 모든 변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자기 국내의 선진지를 방문케 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선진적인 시장경제이행국에 관한 정보에 접하게 하며, 마지막 넷째로는 선진국, 즉 자유시장농업제하의 자본주의국의 실정에 최대한 노출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적 시야의 광역화인 셈이다.

(7) 再學習(Re-learning)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 자체를 위한 행동조치라기 보다는 ‘행하면서 일깨우게 하는’ 이른바 現場的 訓練(On-the-Job-Training)에 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知識변화 → 態度변화 → 實踐’의 이른바 ‘KAP’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의 과정을 밟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흑백론적으로 수정하여야할 바의 문제점을 하나에서 열까지 매도하는 것 따위의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하는 본능에 호소하여야 되는 것이다.

(8) 시장경제이행국에 대하여 농업개발협력을 베푸는 입장에 있는 협력공여측은 협력수령측 또는 국가에 대하여 ‘地域研究’ (Area Studies)의 차원에서 지식을 충분히 지녀야만 되는데 특히 특정국가사회와 농업개발문제에 있어서의 이른바 固有要因(Indigenous Factors)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특정의 농업개발협력공여의 제반영향 — 현재적 및 잠재적 — 을 가늠하여야만 한다. 다시말하면, 협력공여의 순기능과 있을 수 있는 역기능 즉 ‘명암’ 또는 ‘빛과 그림자’를 미리 그리고 협력 집행과정에서 꼭 살필 필요가 있다.

(9) 농업개발협력 공여국측의 전문가들은 고도의 感情移入(Empathy)을 지니며 발휘하여야 마땅한 바, 절대로 무시하거나 나무라는 태도나 언동을 하여서는 참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지니기가 어렵다. 동시에 농업개발협력 수령측에서도 공여자측에 대하여 동반자적인 정신과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일관하여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은 각각 하여야 할 일 또는 책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10) 농업개발협력 공여자측은 수령자측에 어느 필요한 변화, 다시 말하면, 革新(Innovations)을 도입할 때에는 수령자측의 재래적 또는 전통적인 기술이나 관행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재래적 또는 관행적인 기술이나 제도에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농업개발협력공여는 외부적 또는 외래적인(exogenous) 것이며 여기에서 수령자측과 마찰(Friction)을 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文化變異性(Cultural Variability)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농업개발협력에 동원 관계되는 개발협력요원은 필요한 대로의 자격과 능력을 적절하게 갖추어야만 하며 수령국측의 ‘輿論指導者’(Opinion Leaders)(Rogers and Shoemaker(1971), 왕인근(1972))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과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12) 농업개발협력 공여자측에서는 철두철미 수령자측에 무슨 조건을 달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른바 條件附援助(Tied Assistance)는 용납이 안 된다. 물론 농업개발협력 수령자측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발협력 공여자측과 상업적 또는 경제적 거래가 생성될 수는 있다.

(13) 개발과 환경보존과의 친화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제는 오늘날 지구적 과제 중의 으뜸으로 되어 있음은 이미 본 바도 있다. 매우 도전적인 것이나 개발협력 공여자측은 꼭 명심하여야 할 바이다.

(14) 국제농업개발협력의 공여는 수령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베풀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미 본 바가 있지만 비정부기구(NGOs)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나 민간적인 상업적 기업의 참여는 엄격하게 볼 때에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처음부터 고려될 사항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 본질적으로 국제농업개발원조가 되는 국제농업개발협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협력공여측의 무상적인 일방적인 원조가 다름 아닌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본질이 되는 셈이다. 즉 ODA에 의한 선진제국의 원조인 것이다.

(15) 시장경제이행제국이 되는 구사회주의제국가들의 농업은 원래 그들의 체제개발을 위한 원천적 또는 기초적인 것이나 그들의 국가적 체제의 한 하위분야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총체적인 국가체제의 개혁 없이는 새로운 농업개혁은 불가능하고 도전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성취하기 위하여 총체적 체제 이행을 선행적 또는 전체

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음을 극히 자명하다. 여기에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제약적 문제가 인지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농업개발협력은 改善的 接近 (Improvement Approach)이지 變換的 또는 改革的 接近 (Transformation Approach) (Long (1977))의 것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수령국 정부 국가지도자나 농업개발 최고지도자의 코미트먼트(Commitments)가 없이는 선진국측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공여는 가능하지 않다. 동시에 開發協力提供國은 適法的으로는 물론 國民의 合意(consensus)에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다.

(16)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자연스럽게 그의 의미 있는 진전에 따라서 국제농촌개발협력으로 진화될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개발협력수령제국의 총체적인 체제이행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으며, 역으로 총체적인 국가적 체제 이행은 당연히 농업개발적 이행을 촉진시킬 것이다.

(17) 국제정세 또는 국제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 당사자들은 언제나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언제나 농업개발협력 수령자측의 의존성 심화를 경계하며 그들의 자립적 자기노력(Self-help)을 격려하는 것도 농업개발협력 제공자측의 책무가 된다.

(18)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제공은 동반자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국제평화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인도주의적이며 공생적 발전을 기하게 하는 남북협력적인 인류적 공통선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반자적 관계의 정립은 필수적이다.

(19) 결론적인 것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경제이행제국이 자유시장경제를 새로이 형성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제쳐놓는다면 국제농업개발원조는 農業普及事業(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Wang(1984)).

(20) 위협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민주적이자 교육적인 집단적 접근을 취할 경우,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냉철히 살펴 도입하는 것도 연구 검토할 만하다(Wang(1999)).

(21) 국제농업개발협력은 결국 국제농촌개발협력으로 발전적 진화를 보아야 될 것인 바 소농들의 소득의 증대, 빈곤의 경감, 그리고 종국적으로 '삶의 질'의 구현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적 전개를 보아야 될 것이다(World Bank(2000a)).

(22)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좋은 政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World Bank(2000b)). 이미 지적도 하였지만 성공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시장경제이행제국의 민주적 자유주의적 체제로의 진화적 발전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7. 맺는 글

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것을 주대상으로 한 '國際農業開發協力'을 주로 ODA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본고인데, 이것에 엄격하게 구속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문제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는 다름 아닌 정의적 규정인 것이다. 물론 NGOs로서 농업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참여가 극히 중요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제이행 중에 있거나 이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가 스스로도 그들 나름대로 적지 않게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하며 따라서 시장경제적으로 촉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두 범주의 당사자들인 공여국측과 수령국측은 동반자적인 효율적인 관계를 지녀야 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며 필요한 것이 된다. 고차적인 한국과 국제적인 정치역학적인 민감성을 지니는 바 특히 金大中 대통령에 의하여 발의되었다고 보게 되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이른바 '햇볕 政策'은 그의 효율적인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세계사에서 틀림없이 극히 중대한 연구, 평가 그리고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또한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데올로기로 반분된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민족국가이며 또한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장 정통적인 사회주의 군사대국이므로 국제적·국내적으로 동반자적 관계의 정립이 도전적인 상황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44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5 녹지로 7

전화: (031)291-1066

팩시: (031)296-8823

參 考 文 獻

國際農林業協力協會(AICAF) (1988): 國際農林業協力, 11, 1-2.

_____ (1992): 國際農林業協力, 21, 9, 東京.

_____ (1997-1998): 國際農林業協力, 20, 8, 東京.

_____ (1998): 國際農林業協力, 21, 4, 東京.

_____ (1999): 國際農林業協力, 22, 1, 東京.

_____ (2001a): 國際農林業協力, 23, 9・10, 東京.

_____ (2001b): 國際農林業協力, 24, 3, 東京.

_____ (2002): 國際農林業協力, 25, 1.

國際協力總合研修所 (1995): 『國際協力概論』(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地球規模の課題"(Global Issues).

_____ (2001): 國際協力研究, 17, 1.

博英社(1994): (增補)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부경생 외(2001): 『북한의 농업: 실상과 발전방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왕인근(1972): "농촌부락에 있어서의 여론지도자,"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4호.

_____ (1982): 『韓國農村開發研究』, 서울, 박영사.

_____ (1983): 『現代의 農村 社會學: 韓國農村社會學序說』, 서울, 박영사.

_____ (1995a): 『농촌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1995b): 『아프리카 농업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장현식(1999):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방향』,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주봉규·박정근(2001): 『현대농업경제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2000):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11, 4, 수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농업수산물과학협회·농촌진흥청(1998): 『한국농업 50년,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의 50년 기념 농업과학 심포지엄』, 수원, 한국농림수산물과학협회·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계간).

_____ (2000): 『북한농업개발을 위한 협력안 모색』.

_____ (2002): 『농업전망 2002』,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甘川隆吉 監修(1983): 現代社會學辭典, 東京, 有信堂.

嘉田良平他(1995): 開發援助の光と影 — 援助する側・される側, 農山漁村文化協會.

國際農林業協力協會(1998): 我が國の農林業開發協力40年史, 東京.

多谷千香子(1994): ODAと環境・人權, 東京, 有斐閣.

東京國際研究ワテブ(1990): 東西對立を越えつこ社會主義國の變顔と先進國の課題, 東京.

東京農業大學/日本農業を考る會編(1992): 21世紀農業の提言.

齋藤 優(1995): 國際開發論: 開發・平和・環境, 東京, 有斐閣.

福武直, 日高之郎, 高橋 徹 編(1966): 社會學 辭典, 東京, 有斐閣.

- 松井 謙(1979): 開發援助の經濟學: 援助の論理と現實, 東京, 新評論.
- 守友裕一(1991): 内發的發展の道,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 1990年代初頭(に)ずける東歐の農業改革のびやく農業(789)(1990): 農政調査委員會, 東京.
- テオドル・ベルグマン他(1992): 市場經濟化と集團農業の解體,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 佐藤 寛 編(1994): 援助の社會的影響,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_____ (1995): 援助の實施と現地行政,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_____ (1996): 援助研究入門 — 援助現象での學際的アプローチ,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_____ (1997): 開發援助とバングラデツ,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河合省三 編著(1995): 國際農業開發, 東京, 農 統計協會.
- AICAF(2000): 村むらの開發をめざすNGO活動ハンドブック, 社團法人 國際農林業協力協會, p. 255.
- Asian Development Bank(1984): *Rur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 Bhalla, A., D. James, and Y. Stevens(eds.)(1984): *Blending of New and Traditional Technologies-Case Studies*, Dublin, Tycooly International Publishing Limited.
- Brooks, Karen(1996): "Russian Agriculture: 1992-1994," *Agricultural Reform in Russia: A View from the Farm Level*,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Chambers, Robert(1983): *Rural Development: Putting the Last First*, London, New Yor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 Commonwealth Secretariat(1980): *Participation Learning and Change*.
- Cooper, Frederick, and Randall Packard(eds.)(1997):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Scienc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icher, Carl K., and John M. Staatz(eds.)(1988):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erm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SE)(1990): *Development and Cooperation(D+C)*, No. 1/1990.
- _____ (1999a): *Development and Cooperation(D+C)*, No. 2/1999.
- _____ (1999b): *Development and Cooperation(D+C)*, No. 4/1999.
- Greenshields, Bruce L., and Margot A. Bellamy(eds.)(1983): *Rural Development; Growth and Inequit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
- Hayami, Yujiro, and Vernon W. Ruttan(1971):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 Perspective*(Revised and Expande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2001): *Global Food Projections To 2020: Emerging Trends and Alternative Futures*, August.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2000):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nual Report 2000*, Toky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edlicka, Allen D.(1977):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 Risk Tak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Laszlo, Ervin(ed.)(1984): *Cooperation for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1980s*, England, Tycooly International Publishing Limited.
- Leagans, J. Paul, and Charles P. Loomis(eds.)(1971): *Behavioral Change in Agriculture: Concepts and Strategies for Influencing Trans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ng, Norman(1977):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OECD(1989):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1989 Report), Paris.
- Pinstrup-Anderson, Per, and Others(1995): "Foreign Assistance to Agriculture: A Win-Win Proposition," *Food Policy Report*, June.
- Rogers, Everett M., and F. Floyd Shoemaker(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s-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 Tilakaratna, S.(1981):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Konrad-Adenauer-Stiftung.
- Tri, Huynk Cao, and Others(1986): *Strategies for Endogenous Development*, Oxford & IBH Publishing Company.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Human Development Report*(Ann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ng, In Keun(1984): "The Role Performance and Strategie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I, 2.
- _____(1999):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Rural Saemaul Undong in the Republic of Korea." Reference Paper in the Multi-Country ICD Study Meeting held in Taipei, Taiwan.
- World Bank(2000a):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Attacking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b): *Reforming Public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A World Bank Strategy*,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oung, Oran R.(1989):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ding Regimes for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Cornell University Press.